

이명박, 재수감된다...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다스 실소유’하며 비자금 300억 횡령 혐의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구한 혐의까지
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 판결까지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2월	검찰,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2018년 3월14일	검찰, 이명박 소환...“참담한 심정, 국민께 죄송”
4월9일	검찰, 이명박 구속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5월23일	1차 공판...이명박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9월6일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원 구형
10월5일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 선고
2019년 1월29일	이명박, 보석 청구...“노쇠한 전직 대통령”
3월6일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349일 만에 석방
6월14일	검찰 “뇌물 51억원 추가해달라”...공소장 변경 신청
7월4일	김백준, 증인신문 불발...결국 증인 철회
2020년 1월8일	검찰, 징역 23년·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 구형 이명박 “부디 진실 밝히는 법정 돼 달라”
2월19일	2심,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8억원 선고 보석 취소돼 재구속
2월25일	이명박, 보석 취소 불복...재항고장 제출 법원, 구속 집행정지...재수감 6일만에 석방
2월28일	검찰, 구속 집행정지 불복...항고장 제출
10월29일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벌금 130억원·추징금 57.8억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 사 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 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 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 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남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 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 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 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 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 고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 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 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 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 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 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 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 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 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 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



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 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 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 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 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 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 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 른 범죄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 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 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 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 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 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 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

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 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위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 었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 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 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견회 삼성 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 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 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 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 금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 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집행 촉탁돼 처 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경 우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 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 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도 “형 집행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경호팀과 당사자 측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753번길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